

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48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9. 5. 7

발 의 자 : 권형례 ·오영세의원 외 5인

1. 제안이유

산업화·도시화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가족 연대감이 낮아짐에 따라 노인학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노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효행문화 증진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모든 노인에게 생활권을 보장하는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효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, 업무, 위탁운영, 지도·감독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 내지 제6조).
- 라. 효의 날을 정하고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 및 안 제8조).
- 마.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9조).
- 바. 부모 등을 위하여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0조)
- 사.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합 의 :

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) ①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
2.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
3.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4.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

③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④시장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.

제3조(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) ①시장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, 사회복지시설,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) ①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문화지원센터(이하

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「민법」 제32조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③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1.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
2.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
3.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
4.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
5.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
6.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·홍보
7.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

제6조(지도·감독)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·감독하게 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효의 날)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.

제8조(표창)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제9조(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)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

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) ①시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1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관련 법령

□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[시행 2008. 8. 4] [법률 제8610호, 2007. 8. 3, 제정]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 (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시설, 사회복지시설, 평생교육기관,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 (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)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.

제11조 (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 (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3조 (민간단체 등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민법 제32조

제32조 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□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

제4조 (등록)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(이하 "주무장관"이라 한다),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,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.

②주무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